

“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!”



한국사회복지사업회
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

수신자 : 수신처 참고

(경 유)

제 목 :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기준 및 현장실습확인서 개정내용에 관한 안내

1.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로 교육·훈련하는 과목으로 내실있는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3. 이에 아래와 같이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관련 [별표 1]에 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실습 전 학생들이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,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래의 법적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

(‘11. 4. 현재 ‘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’ 미충족으로 인한 자격증 불합격자 19.3%차지)

4. 또한,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중 **실습지도교수 서명(인)**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사오니 반드시 개정된 양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. (<붙임 1.> 참고)

※ 실습지도교수의 휴직·사임·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, 확인 가능한 학과장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대체 가능

- 아 래 -

○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관련 [별표1])

가. 실 습 기 관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

나. 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
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

다. 실 습 시 간 :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

○ 적용시기

가. 전문대학·대학교·대학원 재학생 :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

나. 학점은행제(시간제등록·평생교육원) 이수자

: 201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

※ 참고 : 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「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」, 「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」 양식은 홈페이지 (<http://lic.welfare.net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: 1.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 1부. 끝.

한국사회복지사업회장



수신처 : 전국 사회복지학과·사회복지관련학과 및 교육기관

담당자 남가현

과장 김경화

차장 신용석

사무총장 원명순

회장 조성철

협조자

시행 한사협-2011-공문발송-00205 (2011. 4. 25)

접수 (. .)

우 140-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-85 GS한강에클라트 202호 /홈페이지 : <http://welfare.net>

전화 02)786-0845 / 전송 02)786-6524 / 이메일 dotn02@naver.com /공개